

● 세계 각국의 도서관법 —————

미국의 도서관 및 정보과학 전국위원회 설치법의 내용과 제정 경과

I. 설치법의 내용

미국 상하양원에서 심의 의결하여 설치된 도서관 및 정보과학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설치법이 1970년 7월 20일 공포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전기위원회는 미합중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예산 회계 사무 재정 보고 인사 및 물품 조달 행정사무 등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의 보건교육후생성이 담당하고 소요 경비는 전기 위원회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업무로는,

전국적인 도서관 정책 수행에 관한 입안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도서관 및 전국민의 정보요구(특수 도서관 농어촌지대 등 사회, 문화, 경제적인 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함을 포함한다)에 응하여 조사 연구 분석하고 현재의 도서관 정보자원 및 서비스의 상태, 기존의 도서관과 정보과학의 프로그램(program)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검토, 도서관과 정보 과학의 요구에 대해 연방정부, 주 및 각 지방별 수준에 따라 도서관 및 정보과학 활동에 따른 제반활동을 조정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연방정부와 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에 대해 도서관 및 정보과학활동에 대해 조언(advice)한다.

전국적인 통신망<National Communication Network>을 활용하여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국민의 도서관 및 정보처리 기능에 대한 제반조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나가는데 전국적인 여론을 듣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는 규정도 포함시키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인 미국의회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열 다섯명으로 하고 이들의 임명은 상원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15명의 위원중 5명은 현직 도서관원이거나 과학정보분야의 전문가로서 임명하고 나머지는 현직자가 아니더라도 도서관 및 정보과학에 정통한 분들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이 도서관 및 정보과학 전국위원회 설치법의 내용이다.

2. 제정의 의의

닉슨대통령은 동 설치법의 서명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행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봉사와 도서관 전립 등에 따르는 제반업무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원조계획에 의하여 비록 집행된다 하더라도 주정부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 너무 과중하며 때로 긴급을 요하는 도서관 사업에 의해서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다양화되어 있는 도서관 원조계획을 단일화시키기 위하여 이 설치법을 제정한다 하였다.

요컨대 닉슨대통령의 성명서는 연방정부가 폐고있는 도서관 원조계획을 전국적으로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도서관 원조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67년 10월 정부 부처간에 도서관 및 정보과학 관계위원회(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점차 그 액수가 증대되어감에 따라 주정부에 대한 행정적인 간섭이 잦아지고 있다는 비난이 주 또는 지방단체 직원들간에 일어나고 있다 하였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보조금을 요청하는 기관도 늘어나는 한편 이 제도에 대한 비판 또한 적지 않아 그 시정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주 및 시에 대한 부분적인 연방정부의 원조계획은 주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연방정부에서 통괄해 나가야 한다고 전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불합리한 제반사항을 시정키 위한 것이 본 위원회 설치의 가장 큰 임무로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 도서관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도시 지구도서관 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출간한 바 있다.

3. 각종 도서관 원조계획에 따른 보조금액

도서관 및 정보과학에 관한 전국위원회의 임무 가운데 현재의 도서관 및 정보자원의 검토와 도서관 원조계획의 단일화로 대학도서관 및 전국도서관 봉사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출내용은 대학에서의 도서, 잡지, 기타 도서관 자료의 수집, 모든 부문의 도서관 직원 양성, 정보의 정리 보존 및 보급에 대한 새로운 조사방법과 실험계획,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학술자료의 수집, 목록작성을 위한 미국의회도서관에 대한 원조, 그리고 의학도서관 원조법 등 특수도서관 원조에 대한 관계법이 상당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에 의하여 1968년 회계년도의 원조액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봉사 및 건설법에 의하여	114,000,000달러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150,000,000달러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72,770,000달러

의학 도서관 원조법에 의하여	21,000,000달러
총 액	357,770,000달러

1956년 도서관 봉사법이 도서관 봉사 및 건설법으로 개정된 후 750만달러의 보조금이 인정됐지만 그후 12년 후인 1968년에는 3억 5,777만 달러라는 거대한 보조금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원조계획을 억제하고 경비를 절약하여 될 수 있는 한 통일적인 시책을 펴고자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1970년도에 고등교육법 제2장에 명시된 대학도서관 원조, 사서직 양성, 도서관학 조사 연구 등에 대한 원조 계획을 개정하고자 하였지만 대학도서관측에서 반대를 하고 이 법안의 추이에 예의 주시해 왔던 것이다.

도서관 정책을 통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기존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날 염려가 있고 또 단편적으로 개개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일임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서관 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게 되고 때로 수행중인 업무계획과 중복되어 귀중한 국고금을 낭비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국적인 요구를 종합해서 통일적인 시책을 세우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행정 및 사업이 그 책임분야에 따라 분권 또는 분담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그 시책을 조사 검토 단속할 기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 이 위원회의 설치이다.

4. 경과

위원회 설치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1966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11301호에 의해 대통령 도서관 심의회(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ies)와 도서관 전국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Libraries)의 설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기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출한 권고서에서 연방정부의 정책기관으로서 위원회 설치를 권유한 것이다.

대통령은 자문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자문하였는데 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도서관을 원조하는 방안을 연방정부가 합리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기존의 계획대로 단위 기관별로 업무를 수행하여 가는 것이 좋은가, 납세자에 대해 도서관은 최대의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연방정부의 보건교육후생장관이 되고 위원으로는 과학기술국장, 국립과학재단 이사장과 미국의회도서관장으로 임명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20명의 연방정부직원과 그밖에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1968년 자문위원회는 미국학회, 연합협의회 등 13개 부문에 연구보고서와 공청회 기록을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요강을 포함한 권고문을 작성했는데 연방정부의 상설계획기관으로서 도서관 및 정보과학에 관한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미국 국립도서관으로서의 미국의회도서관의 기능의 강화,

각분야에 걸친 조사연구에 대한 주요 센터로서 도서관 정보과학 연방연구소의 설치,

연방교육국의 도서관봉사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극히 중요한 임무의 수행.

주도서판국을 강화하고 현재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권고내용이 1969년 6월 23일 칸자스시에서 개최된 미국도서관협회 제87연차 대회석상에서 대통령자문위원회 부의장이 회원들에게 보고했으며 이어 자문위원회 의장이 권고서를 정식으로 작성 69년 7월 1일 보건교육 후생장관이 도서관 심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심의회 의장은 이 권고서에 심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69년 10월 3일 대통령에 제출되고 10월 15일에 대통령에 정식 접수되었다.

연방정부는 이 권고서를 기초로 도서관 및 정보과학에 관한 전국 위원회 설치를 결의 69년 12월 제91차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1970년 7월 20일 미공법(Public Law) 제91—345호로 공포되었다.

■ 도서관 정보과학 전국위원회설치법

본 법은 미 합중국 상·하양원에서 의결 제정된 도서관 및 정보과학에 관한 전국 위원회 설치법이다.

● 시책(施策)

본 위원회는 도서관 정보과학 서비스가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교육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확신하고 연방정부는 주(洲)지방자치단체 공사립 기관(公私立機關)에 유효적절히 봉사업무를 수행하여 나가도록 상호협조하여 나갈 것이다.

● 위원회 설립

도서관 및 정보과학 전국위원회를 행정부내에 독립기관으로 설립한다(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보건교육후생성은 동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예산, 회계, 재정보고, 인사, 물품조달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동 위원회와 보건교육후생장관이 승인하여 재결 또는 후결을 받아 지출한다.

● 기금

동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촉진시켜 나감에 각급 보조금, 증여금, 자선금 등을 국가명의로 받아들일 권한을 향유한다.

이와 같은 기금들이 동 위원회에 접수된 후 미국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기증자 또는 이를 대표자에게 기금 수령증을 발급해 준다.

미국 재무부장관은 이 기금을 위원회 명의로 특별회계에 계정하고 세목별(細目別)로 명세화(明細化)시킨다.

● 기능

동 위원회는 동법 시책(施策)란에서 밝힌 정책을 구현함에 관계부처와 기관에 자문하

며 전반적인 계획의 제안 또는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① 성명서, 안건제시(案件提示) 기타 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보고서 등 국가정책을 수행하여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과 의회에 건의한다.

②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별로 요구되는 인포메이션을 포함하여 각급 인포메이션 센터를 통하여 들어오는 요구, 즉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연구도서관, 특수도서관 기타 여러 도서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국민이 요구하는 도서관 및 인포메이션의 연구, 조사, 분석을 관장한다.

③ 현재의 도서관과 정보자원의 적(適) 부족(不足)을 평가하고 도서관 및 정보과학계획의 효과도(效果度)를 측정한다.

④ 전국 도서관 정보과학분야의 회의와 연방정부, 주지역단위의 활동을 조정하고 전국 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및 정보자원을 감안하여 총체적인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

⑤ 도서관과 정보과학에 관한 연방정부, 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립기관(公私立機關)에 전의할 권한을 가진다.

⑥ 전국의 통신망과의 진요한 연계(連繫)를 맺어 도서관과 정보과학이 다를 문제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촉진시킨다.

⑦ 전회계년도기간에 동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해마다 1월 31일 이전에)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⑧ 이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의 보고서, 추가 보고서, 보고서의 요약, 위원회의 조사, 연구, 천거 등의 레포트를 발행한다.

동위원회는 연방정부의 기관 기타 공사립기관의 세칙(細則)에 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여 나가는데 약정(約定)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동위원회는 그와 같은 조사 연구 기록물 등 기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보고서를 간행, 배포한다.

동위원회는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여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청회의 개최 장소 시간 등을 관장할 권한을 갖는다.

모든 연방정부의 기관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본법의 기능을 수행하여 나가는데 동 위원회와 협조하도록 한다.

● 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상원의 승인과 권유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14명의 위원과 국회도서관장으로 구성한다. 전체 위원중의 5명은 도서관 전문인 또는 정보과학분야의 전문가로 하고 그밖에 위원들은 도서관과 정보과학분야에 상당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적어도 이중 1명은 도서관 정보과학분야에 전문가이어야 한다.

위원중 대통령은 위원회의 의장을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본법 발효일로부터 산정(算定)되며 위원중 2명은 일년을 임기로 하고 3명은 2년으로 하고 그 다음 3명은 3년으로 하고 또 그 다음 3명은 4년으로 그밖에 3명은 5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임명기간은 대통령에 의하여 정해진다. 결원이 되어 임명을 받게 되는 위원은 선임자의 잔여임기 기간

동안에만 임명하게 된다.

위원중 정부 각 부처의 정규직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 의회의 기타 회합에 참석하거나 그밖에 동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할 때는 의장은 위원들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이때에 지급기준액은 출장시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법령 제5장 5332조 GS 18(급료등급 기준)에 명시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들은 그들의 직장, 사업처, 가정에서 멀리 떠나 위원회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미합중국 법령 제5장 5703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한다.

동위원회는 본 법령하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 나갈 수 있게끔 필요한 전문적이고 상당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데는 미합중국 법령 제5장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임명할 권한이 있다.

동 위원회는 미합중국 법령 제5장 3169조에 의거한 범위내에서 필요로 하는 임시 또는 비정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초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급료도 출장시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법령 제5장 5332조 GS 18급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에 잠정적으로 근무하는 자에 지급하는 임금도 미합중국 법령 제5장 5703조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출장비를 지급한다.

● 예산 집행

본 법을 수행하여 나가는데 1970년 6월 30일 회계 연도말에 500,000달러 1971년 6월 30일 회계연도말에 750,000달러에 도달하는 예산액을 연년(年年)이 계속하여 위원회는 예산 지출권을 갖는다. <1970. 7. 20. 승인>

고객 여러분의 꾸준한 지도와 편달로 성장한
폐사는 항상 여러분의 편익에 도움이
되고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쿠폰 대행기관
- 단행본 및 학술잡지
- 구미서적 수입판매

과 학 서 적 쎈 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 21번지 광화문사서함333호

전화 (733) 6719 (735) 0934